

산업융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 이내
------	-----	------	--------

신청인	기관명 · 법인명	
	대표자	전화번호
	주 소	

기관 · 법인의 요건	()	다음에서 신청인이 해당하는 기관 등의 번호를 괄호 안에 적습니다.	
	1.	국공립연구기관	
	2.	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	
	3.	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	
	4.	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·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	
	5.	「산업발전법」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	
	6.	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융합 분야의 전문기관	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정관 또는 사업운영 규정 2. 전담 인력의 보유 현황(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 제31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)과 배치 계획서 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센터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